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76 발의연월일: 2025. 1. 13.

발 의 자:황정아·이기헌·신정훈

박용갑 · 조승래 · 임광현

한민수 · 맹성규 · 채현일

박정현 · 장종태 · 이병진

홍기원 • 박지원 • 허성무

민형배 • 박희승 의원

(17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으나,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의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음. 그리하여 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재판 기록 확보를 시도하는데,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범죄 가해자인 형사 피고인에게 넘어가 보복범죄 위협에 노출되기도함.

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,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 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.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하며,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94조의4).

법률 제 호

#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4조의4제1항 중 "재판장에게"를 "법원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재판장"을 "법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재판장은"을 "법원은"으로, "경우 범죄의 성질, 심리의 상황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"을 "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"으로, "허가할 수 있다"를 "허가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.

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법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⑦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4조의4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29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 안 혂 행 개 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 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 록 열람·등사) ①소송계속 중 록 열람·등사) ①-----인 사건의 피해자(피해자가 사 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 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•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 함한다).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 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・ 직계친족 • 형제자매 • 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 법원에-----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 ②법원----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, 피 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 를 통지하여야 한다.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 ③법원은----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, 심 ---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리의 상황, 그 밖의 사정을 고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-----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 할 수 있다. 허가하여야 한다.

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등사 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 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 건을 붙일 수 있다. <신 설>

⑤ (생략)

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 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
- 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  - ⑤ 법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 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 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  - ⑦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 다.